

「2014년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선도벤처기업 모집 공고

선도벤처에서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 및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하는 「2014년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우수 선도벤처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4년 3월 7일

중소기업청장

* 동 모집공고는 창업자를 지원할 선도벤처기업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예비]창업자 모집은 선도벤처기업 선정 후, 3월 마지막주 별도 공고예정입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성공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선도벤처기업 보유 인프라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 유도 및 협업 성공률 제고

□ 사업규모 : 75억원

- * 선도벤처 40개 사, 창업팀 총 80개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초기 창업보육) (예비)창업팀 및 창업기업(3년 미만)을 선도벤처내 입주(1~2년) → 시제품 제작, 판로·마케팅, 멘토링 등 창업보육 지원
- (협력 비즈니스) 선도벤처의 직접투자 및 구매·아웃소싱, VC 유치, 해외 마케팅(INKE 활용) 등 협력 비즈니스 연계지원
- (정부지원금) (예비)창업팀당 최대 9천만원 한도(총사업비 70% 이내)
 - (예비창업자) 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및 인증비, 국내외 마케팅비용 등 지원
 - (선도벤처) 창업인프라비, 정보활동비(멘토링, 기술·경영지문 등)로 최대 3천만원 한도

2 선도벤처기업 모집 세부 내용

가. 신청 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벤처기업이거나 벤처기업 등록이력을 보유하고 있고 아래의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기업

- ① 사업시행일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100억(비제조 50억) 이상으로 국내 판매망 또는 해외 현지법인 보유 기업
- ② 자본잠식 등의 재무적 문제가 없는 기업
- ③ (예비)창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창업준비공간, 공용회의장 등)을 갖추고 있는 기업
- ④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기자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선도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 (예비)창업자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벤처기업 등록이력이 없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

나. 평가 및 선정

- (1차, 현장평가) 평가반(주관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인터뷰 진행 및 지원시설 확인
- (2차, 서류평가)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7인 이내)를 통해 심층 인터뷰 결과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최종 선정

< 선도벤처기업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세부항목	배점
협력 가능성 및 의지 (10)	경영진의 협력의지	10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55)	창업준비공간 보유 현황	20
	전문인력 보유 현황	15
	개발기자재 보유현황	20
사업화 지원 능력 (35)	국내·외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현황	15
	지원계획의 적정성	20
합계		100

다.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00만원 한도(정부지원금의 최대 1/3 범위내)
- (지원 항목) 창업인프라 구축비(창업 준비공간 임차비용), 정보 활동비(전담 멘토링, 경영·기술 자문 등)에 한해 지원

< 사업비의 구성 및 내용 >

항 목	세 목	내 용
직접비	창업인프라 구축비	창업 준비공간, 집기 및 비품(자부담금 내 자산성 비품 구매 가능) 등
	정보활동비	멘토링, 기술·경영자문, 교육비, 학회참가비, 참고 문헌 등
	시제품제작비	시제품제작에 소요되는 실비(인건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임차비, 외주용역비 등)
	지재권취득, 인증비	지재권 출원·등록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참가,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시장조사비 등
	공통경비	우수 기술창업자 해외연수, 연계지원 사업, 선도벤처기업 인센티브, 전문교육 및 워크숍 등

라. 추진 절차

선도벤처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청)

'14. 3. 7

신청·접수
(주관기관)

'14. 3. 7 ~ 3. 19

현장 및 서류평가
(주관기관)

'14. 3. 20 ~ 3. 26

선도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 매칭
(주관기관)

'13. 4월말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중소기업청)

'13. 3.28

선도벤처기업 선정 통보
(주관기관)

'14. 3. 27

3

기타 사항[신청·접수 방법, 추진절차 등]

가. 신청·접수

- (신청기간) '14. 3. 7(금) ~ 3. 19(수), 18:00시 우편소인까지 유효
- (신청방법) 우편 또는 인편 접수('별지 1호' 신청서 작성)
- (접수처)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
※ 선도벤처기업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여성벤처협회에 참여 신청
- (사업안내) 주관기관별 홈페이지에 개별 안내
 - * (벤처기업협회) www.kova.or.kr, (한국여성벤처협회) www.kovwa.or.kr

나. 문의 및 연락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고
(사)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실	(전화) 02-6331-7082, 7086, 7087 (팩스) 02-553-3813 (메일) blue1823@kova.or.kr, nggh@kova.or.kr, sblee@kova.or.kr	
(사)한국여성 벤처협회	기업지원팀	(전화) 02-2156-2166, 2162, 2176 (팩스) 02-2156-2173 (메일) rekaos@kovwa.or.kr, jh@kovwa.or.kr, jjy@kovwa.or.kr	주관 기관

[별지 제 1호 서식]

〈선도벤처기업용〉

* 표지의 굵은 선 안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관리번호		접수번호	
------	--	------	--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신청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휴대폰 번호)		
	주 소				매칭 희망 (예비)창업자 수	개
	총 종업원 수	명	연구 직원	명	마케팅 직원	명
	담당자		E-mail		TEL / HP	
매출실적	구 분	2012년	2013년(추정)	주종 품목 및 기술(매출액 : 억원, 전체대비%)		
	국내매출액	억원	억원	1) 품명: 매출액: (%)	3) 품명: 매출액: (%)	
	해외매출액	억원	억원	2) 품명: 매출액: (%)	4) 품명: 매출액: (%)	
합 계	억원	억원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에 선도벤처기업으로 신청하며, 동 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사업 적격심사 및 신용정보 제공에 활용하며, 신청과정 및 선정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신청 주관기관명 기입) 귀하

* 첨부서류는 예비심사팀에서 심층인터뷰(현장방문) 진행시 제출 요망

첨부] 1. 선도벤처기업 현황 및 매칭희망 창업 분야 조사표

2. 수출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및 거래은행 발급에 한함) 1부

3. 최근 2사업연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 1호 서식 첨부1]

선도벤처기업 현황 및 매칭희망 (예비)창업기업 조사표

가. 기업의 일반현황

■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홈페이지		
기업일반	회사개요	1. 주력업종 2. 주생산품 또는 주서비스 품목 3. 회사소개 등				
		주요거래처	국내	거래처명 매출액		
			해외	거래처명 매출액		
	해외유동망 현황	해외지사 에미전트	국가명			

나. 매칭희망 (예비)창업자

■ 귀사에서 매칭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공동사업개발 분야를 기재해 주십시오

매칭가능 기술분야	<input type="checkbox"/> 기계 <input type="checkbox"/> 전기 <input type="checkbox"/> 전자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에너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제품으로 제작 가능한 특허 등 제품(기타 :)
매칭희망 기술 및 제품분야	
(예비)창업자 지원계획 및 협업가능 모델	※ 제품 및 기술구매(연계), 투자(연계), 공동사업모델 발굴 등

* 본 사업의 참여 (예비)창업자와 매칭을 희망하는 분야의 내용과 지원계획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매칭희망 응답에 따라 귀사가 희망하는 기술력의 보유 (예비)창업자와의 매칭을 지원해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신청 주관기관명 기입) 귀하

[별지 제 1호 서식 첨부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을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